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6/ 3/ 4 통권 1769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12월말 결산법인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 戰略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경영판단 원칙
- 이해상충의 위험평가 실무 (3)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 전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10만개 법인에게 3조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세청장, 연구개발 세정지원으로 '미래전략산업 성장' 돕겠다!
-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 총 1,785억 원 추징
-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꾸쳐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자동차 판매 사업자가 직접 영업관련(전시, 시승)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p.11)

<회사조직유형별 회계와 감사제도 현황>

구분	근거법령	주무관청	회계기준	내부회계	외부감사	감사인 지정	외부감리 제도
일반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부감사법 (자산 120억 이상 등)	금융위원회 한공회	일반기업 회계기준	해당없음	해당	회계위원 지정제도	한공회 감리
중소기업	상법 (매출 100억미만)	해당없음	중소기업 회계기준	해당없음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상장법인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K-IFRS	적용	해당	6년자유 +3년지정	금융감독원 감리
공익법인	상속 증여세법	재정경제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비해당	해당	4년자유 +2년지정	한공회 감리 적용
공기업 등	공공기관 운영법	재정경제부	공기관 회계기준	적용	해당	적용안됨	한공회 감리 적용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비해당	해당	4년자유 +2년지정	한공회 감리 적용
의료기관	의료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기준	비해당	대부분 비해당 (자산 100억 이상 해당)	적용안됨	비해당
공동 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법	지방자치체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비해당	해당 (150호 이상)	적용안됨	한공회 감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 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69호 / 주간 9호

2026. 3. 4.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회사조직유형별 회계와 감사제도 현황	표지
CEO의 경영 산책	경영판단 원칙 - 이해상충의 위험평가 실무 (3)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국내 비영리법인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수입 물품 단가 조정에 따른 회계 처리 - 약정에 의해 채권 대손처리 건 문의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벤처기업 스톡옵션 관련 벤처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한국형 BDC와 주요국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	8 9
직장인Survival	설득력 있는 보고와 제안의 구조	10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 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 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규부가-352, 2025.05.29) - 사업자A(이하 "위탁자")와 사업자B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 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2022.1.1. 전에 체결 하는 경우로서, 신탁계약 진행 중 위탁자가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 우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세의무자 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933, 2025.06.05)	11 12
세정뉴스와 해설	국세청, 10만개 기업에 3조원 유동성 지원...법인세 3개월 직권연장	13
마케팅 Tax consulting	자동차 판매 사업자가 직접 영업관련(전시, 시승)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11
세무정보	- 10만개 법인에게 3조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세청장, 연구개발 세정지원으로 '미래전략산업 성장' 돕겠다! -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 총 1,785억 원 추징 -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14 27 31 37 45 48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44

경영판단 원칙

- 이해상충의 위험평가 실무 (3)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상법상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해관계자(특히 이사·대주주·특수관계자)의 위험을 평가할 때, 기업 실무 핵심은 “사전 식별-위험평가-완화조치-기록 및 사후 모니터링”의 체계를 정교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기업현장에서 고려할 실무사항을 요약하여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해상충 거래의 체계적 식별 : 사전 식별

-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특수관계인 내부거래, M&A·지분거래·증자/감자·전환사채 등 지배구조에 영향 미치는 거래를 “고위험 이해상충 카테고리”로 분류해 등록한다.
- 2025년 개정안에서 강조된 “주주의 이익 보호·공평대우”를 내부 규정에 명문화해, 소수주주와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별도 리스크로 식별하도록 한다.
- 연간·수시로 이해관계자(이사, 주요주주, 특수관계법인)의 이해관계(지분·보증·계열직위 등)를 신고·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이를 리스크 평가의 기본 데이터로 사용한다.

2. 정량·정성 결합한 위험평가 기준 설정: 위험평가

- 이해상충 거래마다 다음 요소를 점수화(예: Low/Medium/High)하여 “리스크 매트릭스”를 운용한다
 - 거래 규모(자기자본·시가총액 대비 비율)
 - 거래 조건의 공정성(외부 벤치마크·시장가 대비, 제3자 거래와 비교 가능성)
 - 지배구조 영향(지분율, 의결권,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 이해상충의 직접성(당사자가 이사 본인인지, 특수관계인인지, 지배주주인지 등)
 - 이해상충 관리 장치의 유무(특별위원회, 외부평가, 공개입찰 등)
- 리스크 매트릭스 결과에 따라 승인 절차를 차등화(예: 고위험은 반드시 사외이사 중심

특별위원회+외부평가+이사회·주총 보고)하도록 내부규정에 반영한다.

3. 절차적 공정성 확보(이사회 위원회 운용) :완화조치

상법상 이사 충돌거래는 해당 이사가 의사결정에서 회피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비이해관계 이사(특히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검토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고위험 이해상충 거래는 독립된 특별위원회 설치: 이해관계 없는 이사만으로 구성한다. 충분한 심의 시간 확보 및 복수 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4. 공정가치·소수주주 보호에 대한 실질 검토:완화조치

- 공정가치 검토: 외부 가치평가(투자은행·회계법인 등)를 활용해 거래 조건의 적정성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확보한다. 제3자 비교 거래, 공개입찰 여부, 시장에서의 대체가능성 등을 비교 분석하여 “왜 이 조건이 회사 전체 및 일반주주에게도 공정한지”를 검토 설명한다.
- 소수주주 보호 측면: 희석, 의결권 구조 변화, 우호지분 형성, 경영권 방어 효과 등 지배구조적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다. 특정 주주·경영진에게만 사실상 유리한 구조인지(예: 헐값 매각·고가 인수·편향적 교환비율)를 검토하고, 소수주주에게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면 보완조치(공개매수, 주주에게 동일조건 제공, 상장사 기준 공시 강화 등)를 설계 운영한다.

5. 문서화 및 모니터링:기록 및 모니터링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려면, 특히 이해상충 상황에서는 “절차적·실체적 합리성”을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 회의록·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이해상충의 존재와 범위(누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및 당사자의 회피 여부
- 검토 대안(다른 구조·조건·거래 상대방)의 제시 여부와 각 대안의 장단점
- 리스크 매트릭스 평가 결과(재무적 위험, 평판 위험, 규제·소송 위험, 소수주주 영향 등)
- 공정성·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외부 평가, 비교사례, 재무모델 등)와 그에 대한 이사들의 질문·답변 내용·찬성·반대·기권 이사의 구체적 의견 요지(특히 반대의견은 자세히 기재)
- 이해상충 거래 승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결과(재무성과, 시장반응, 소수주주 반응, 규제기관 질의 등)를 점검하고, 예상과의 차이를 분석해 다음 거래의 리스크 평가 기준을 업데이트한다. 내부감사·준법지원인에게 이해상충 관련 리스크를 별도 카테고리 부여하고, 연간 감사계획에 “이해상충 거래 샘플링 점검”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훈련: 이사·임원 대상 교육에서 2025년 상법 개정 내용(주주이익 보호, 공정대우, 이해상충 관리 강화)을 정례적으로 반영해, 판단 기준을 조직 전체에 공유한다.

국내 비영리법인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Q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외 여행사가 국내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여 국내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청구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발행이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사는 해외에 있고 국내 운영 사무실이 있는 상황 입니다.

A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비영리법인이 귀사에게 공급하는 용역이 독립된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수입 물품 단가 조정에 따른 회계 처리

Q

자사는 올해 8월부터 일본에서 DDP (관.부가세 인도자 부담)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이 조건 하에 기존 단가에서 10%를 인상하여 매입하다가 자사가 세관의 부가세가 납부 유예되는 사실을 추후 인지하고 일본측에 이미 지급된 3개월 금액을 소급해서 Credit note를 발급하여 상계하고 앞으로 지급할 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매입 수불과 원가 처리된 금액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이슈가 있는데 꼭 이렇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급된 금액 만큼 매출원가 또는 매입할인으로 전표 계정 처리만 하고 수불과의 차이를 소명해도 되는 걸까요?

A

소급된 금액만큼만 매출원가나 매입할인으로 전표 계정처리하시고 수불과의 차이를 소명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약정에 의해 채권 대손처리 건 문의

Q 당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중국 상해에 현지업체와 50:50의 비율로 합작법인을 2013년에 설립 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누적 적자가 심화되어 자본 잠식된 상황으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해당 합작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려 합니다.

1. 양도가격은 0

2. 당사가 이 합작법인에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이 약 US 360만 달러가 있는데 7백만 RMB를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기로 함.

관련 내용 찾아본 바로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한 금액만 손금불산입이 될런지, 아니면 회수 못하는 전체 금액 전부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2009. 11. 10. 조변개정)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 11. 1.>

A 귀사의 의견대로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접대비 한도액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기업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 판단이 어려운 거래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받거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이 이러한 거래에 해당된다.

즉,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들은 실무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잘못된 신고납부를 하게 하기도 한다.

실제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적용 안됨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반 경리실무자들은 거래상대방,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 면세사업자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가가치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기만 하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제3호는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을 알고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면세사업자 ·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면 되지만,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 용역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과세 · 면세 겸영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거래를 하여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서삼46015-10727, 2001.11.23.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면세사업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돼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서삼-1505, 2007.05.16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벤처기업 스톡옵션 관련 벤처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김원이, 김상훈의원 공통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같음
	스톡옵션 행사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김상훈의원대표발의안	스톡옵션 부여 범위를 기존 자회사 임직원으로 확대
	스톡옵션 행사가 조정 허용



배당소득 세부담 관련 한·미 비교

미국 상장주식	2000만원 이하 = 제한세율 15% 만 내면 과세 종결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6.6~49.5%), 미국 원천징수분(15%) 공제
국내 상장주식(고배당요건 충족 즉 분리과세 적용시)	2000만원 이하 = 14% + 지방소득세 1.4% = 15.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20% + 지방소득세 2% = 22%



한국형 BDC와 주요국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 (미국 BDC, 영국 VCT) 간 비교

	한국 BDC	미국 BDC	영국 VCT
형태	환매금지형(폐쇄형)		
상장의무	상장(5년 이상 환매금지 · 90일 내 상장)	비상장 · 사모허용	상장
최소 모집액	300억원 이상	없음	없음
투자 대상	주투자대상기업 60% 이상 (비상장 벤처 · 혁신기업, 코스 · 코스닥 상장기업, 조합 등) 단,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0억원 미만. 코스닥 조합 투자 비중 산정 시 최대 각각 30%까지 가능	비상장기업 또는 시가총액 2,500만달러 미만 상장기업 적격 중견 기업 비중 70% 이상	비상장기업, 업력 7년 미만, 자산 1,500만 파운드, 종업원 250인 이하 기업, AIM 상장기업, 적격벤처 투자 비중 80% 이상
운용방식	증권(EB · CB · BW 포함) 매입 또는 대출 (투자 대상 기업 투자액의 40%로 제한) 안전자산 10% 이상 (국공채, 예 · 적금 등)	신주 또는 대출 (대부분 대출 위주)	신주 투자(70% 이상 보통주) 또는 5년 이상 만기 대출, 보통주와 대출 동시 투자시 보통주 비중 최소 10%
동일기업 최대 투자 비중	자산 10%, 지분 50%	자산 25%	자산 15%
투자자 보호장치	운용사(GP) 의무 출자 (600억 미만 5%, 600억 초과 1%) 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	주기적 투자성과 및 투자정보 공시	주기적 투자성과 및 투자정보 공시
레버리지	100%	150%	정관으로 정하나 대부분 레버리지 비율 낮은 편
세제혜택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90% 이상 배당 지급 시 법인세 비과세	소득공제(투자액 30%), 배당 · 양도 · 법인세 면제



설득력 있는 보고와 제안의 구조

1. 결론부터 제시한다

설득력 있는 보고의 기본은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다.
무엇을 설명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원하는지 명확히 말한다.
결론이 먼저 제시되면 듣는 사람은 방향을 이해한 상태에서 내용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방식은 보고와 이해 시간을 줄이고 이해도를 높인다.

2. 배경은 필요한 만큼만 설명한다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려다 보면 핵심보다 배경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배경 설명은 결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한다.
불필요한 정보가 줄어들수록 핵심 메시지는 더욱 선명해진다.

3. 근거는 명확하게 정리한다

결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에 대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데이터, 사례, 비교 자료를 활용해 왜 이 방법이 적절한지를 설명한다.
근거가 명확할수록 제안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

4. 선택지를 함께 제시한다

하나의 방법만 제시하면 판단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정리하면 의사결정은 훨씬 수월해진다.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간단히 비교하면 보고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진다.

5.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좋은 제안은 방향에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실행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제안은 현실적인 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①

자동차 판매 사업자가 직접 영업관련(전시, 시승)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규부가-352, 2025.05.29

Ⅰ 질 의

- 자동차판매업자가 신차구입 상담고객을 대상으로 시승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Ⅱ 회 신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법§75의8에 따른 계산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법인-189, 2025.06.25

Ⅰ 질 의

- 신청법인은 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1채를 임대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구속력 있는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계약금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였음

질 의

-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법인법 제75조의8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Ⅱ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1채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8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A(이하 “위탁자”)와 사업자B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2022.1.1. 전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신탁계약 진행 중 위탁자가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세의무자 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933, 2025.06.05

Ⅰ 질 의

-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Ⅱ 회 신

사업자A(이하 “위탁자”)와 사업자B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2022.1.1. 전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신탁계약 진행 중 위탁자가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세의무자 되는 것임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나, 명예회원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소득-1114, 2025.04.08

Ⅰ 질 의

- 질의법인은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교육기본법」 제15조 및 「민법」 제5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단체임
 - 질의법인은 정관으로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회원을 구분하고 있고, 그 구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차이가 있음
 - 정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 명시된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로 기부금으로 인정받고 있음

질의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의 범위에 평생회원이 납부한 회비, 명예회원이 후원금 성격으로 납부한 납입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Ⅱ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나, 명예회원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10만개 기업에 3조원 유동성 지원... 법인세 3개월 직권연장

매출이 감소하거나 고용위기지역 등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환급기한(4월 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3월 정기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세정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이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주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주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 개 법인에게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3개월 직권연장을 받더라도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신청에 따라 추가로 최장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김해상공회의소(1.21.), 포항철강산업단지(1.22.), 여수석유화학단지(1.28.), 대덕연구개발특구(2.4.)에서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바 있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보호무역 강화, 내수부진, 고금리·고환율지속 등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관세 10→15%로... 트럼프 "몇달 내 새 관세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10만개 법인에게 3조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 국세청, 2026. 2

①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번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만 개로 전년에 비해 3만 개 증가하였습니다.

* 12월말법인 신고대상 수: (23년) 107만개, (24년) 110만개, (25년) 115만개, (26년) 118만개

- 12월말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3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이지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연 3.1%)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 납부세액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에게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김해상공회의소(1.21.), 포항철강산업단지(1.22.), 여수석유화학단지(1.28.), 대덕연구개발특구(2.4.)를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

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들은 보호무역 강화, 내수부진, 고금리/고환율지속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세정측면에서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현장 간담회에서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 ❶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❷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❸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환급기한(4월 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여주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여주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 개 법인에게 약 3조 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정지원 규모 ■

구 분	법인 수	지원효과*
❶ 수출기업	1.3만개	1.3조원
❷ 석유화학/철강/건설업	6.5만개	1.4조원
❸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2.6만개	0.4조원
합계 (중복제거)	10.0만개	3.0조원

* 전년('25.3월)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환급)한다는 가정하에 지원효과 추정

□ 세정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 국세청은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 신고를 지원합니다.
 -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공하고 생활용품 구입, 병원진료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안내하여 추후 세금추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공제감면 제도를 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절세도움말로 제공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비용) 계산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데,
 - 올해부터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세청이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확인 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별분석 항목 |

- 법인이 보유(임차)한 주택을 대표자 또는 주주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 법인카드를 대표자 또는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 법인 대표자 또는 주주의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
-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④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신고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의

- 세율이 인상되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9%의 세율을 적용(종전 9%)합니다.
-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시 유의해야 하며,
 -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를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한도 비율이 20%로 상향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1 - 연결납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 (연결납세제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결손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법인세법 §76의8)
-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적용대상 확대
- (적용방법) 모법인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일정 사유* 발생시 승인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재적용 제한
 - *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 미적용, 연결법인에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등
 - (신고납부) 모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납부를 이행하고, 자법인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 (성실신고확인제도)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법인세법 §60의2)

<적용대상 법인>

- ①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권리) 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 내국법인('18.2.13. 이후 법인 전환부터 적용)

③ 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전환 후 3년 이내로서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에 한함)

-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법인세에서 공제(150만원 한도)
- (가 산 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관련 법인세액 제외

참고 2 - 법인세 신고 관련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 및 규모

■ 세정지원 대상 법인 ■

구 분	선 정 기 준	법인수 (지원효과)*
① 수출기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24년 대비 '25년 매출이 감소할 것 ①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중소기업 ② 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 '수출의탑 수상기업'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1.3만개 (1.3조원)
② 석유화학/ 철강/건설	▸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4년 대비 '25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	6.5만개 (1.4조원)
③ 고용/산업 위 기 선 제 대응지역	▸ 여수 등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2.6만개 (0.4조원)
합계 (중복제거)		10.0만개 (3.0조원)

□ 세정지원 내용

- (납부기한 직권연장) 납부 법인은 납부기한을 3개월(3.31.→6.30.) 직권 연장
- 납부기한 추가 연장(최대 '26.12.31.까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 단,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최대 2년('28.3.31.)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국징령 §12②)

구 분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	중소기업
분할납부 기한	'26년 4월 30일 → '26년 7월 31일	'26년 6월 1일 → '26년 9월 1일

- (환급세액 조기지급) 환급 법인은 10일 내(4.10.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 세정지원 규모(세정지원 대상 법인의 '25.3월 신고세액 기준)

세정지원대상 법인수	합 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10만개	3.0조	2.7조원	0.3조원

참고 3 - 신고도움서비스 개요 및 주요 개선사항

□ 신고도움서비스

- (개요)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도움자료 제공
- (화면 구성)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

<제공 자료>

유 형	제공 자료
주요안내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 증빙수취 현황
신고 참고자료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신고 시 유의사항	개별분석·공통분석 자료,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법인별·업종별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 주요 개선사항

- (신고도움자료 확대·보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를 확대 제공* 하는 한편

* 신고도움자료 : ('25년) 430개 유형 → ('26년) 445개 유형(15개 증가)

- 주택 양도내역(일자, 물건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25년 중 폐업한 법인에게도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여 안내 실효성을 높였음
- (연결납세 법인 개선)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연결 납세 법인의 수정신고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신고도움자료 안내

- (모바일 안내) 신고시 유의사항에 개별분석자료가 제공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 사항을 직접 제공

참고 4 - 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제도개요

- 내국인이 2028.12.31. 이전에 법인카드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② 지출처가 모텔 및 여관업,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등 경영사업자가 아닐 것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1) + (2) + (3)

(1)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① + ② + ③

- ①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사업연도월수÷12)
- ② 일반수입금액 한도 =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0.3/0.2/0.03%)
- ③ 특정수입금액 한도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0.3/0.2/0.03%) × 10%

(2) 문화비지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min(①, ②)

- ① 문화접대비 지출액
- ② 위 (1)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3) 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min(①, ②)

- ① 전통시장 지출액
- ② 위 (1)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 세법개정

- '24.1.1. 이후 신고분부터 최초 도입(손금산입 한도액 10% 범위 내), '26.1.1. 신고분부터 손금산입 한도액 20%로 상향

참고 5 -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정 사례

①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등 업무무관 비용을 손금에 산입

□ 사전 신고안내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①신변잡화 ②가정용품 구입 ③업무무관업소 이용 ④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 비용 처리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영상컨텐츠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의 대표이사 △△△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 여행, 골프장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

□ 검증결과

- (주)□□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 과소 혐의에 대해 계정별원장, 지출증빙 등 해명자료를 검토한 바 업무무관 비용 계상을 확인
→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부당공제

고가의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

□ 사전 신고안내

- 법인이 보유한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됨을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는 고가의 수입차와 캠핑카를 보유하고 있



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 업무무관 법인카드 사용금액 및 지출증빙 없는 경비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 검증결과

-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검토한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신용카드 사용 지역, 주유 내역, 하이패스 사용 현황 등 참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추정



✓ 특수관계인의 사적비용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③ 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

직원 사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

□ 사전 신고안내

- 법인이 소유·임차한 주택 중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주)□□이 임차한 주택을 대주주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 최대주주와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 이자비용·주택 유지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추징하고 주택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최대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



✓ 주택 유지비용 및 임대료 시가 상당액 손금불산입 최대주주 배당 소득처분

④ 비상주 공유오피스 이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당 적용

실질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후 사업자등록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 사전 신고안내

-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법인이 실제 업무는 서울 소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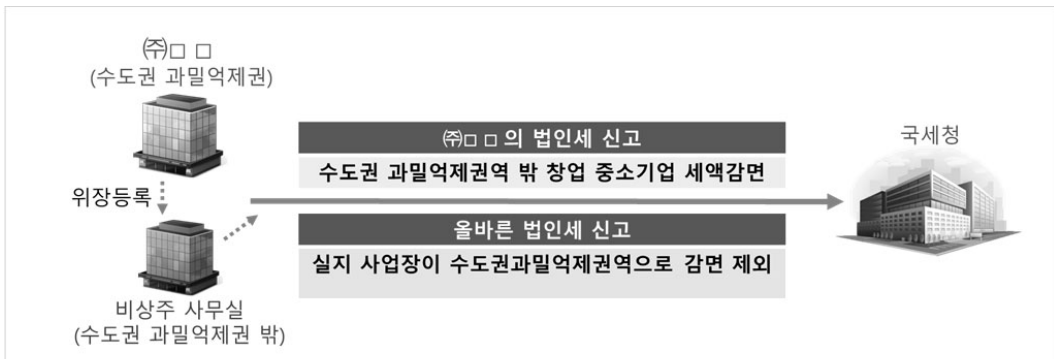


장에서 수행하면서, 주소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유오피스에 두고 창업중
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 검증결과

- 택배 발송내역, 대표자 및 직원의 거주지 등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는 수도권과밀억
제권역 내로 공유오피스는 인적·물적 시설없이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장소임을 확
인

→ 부당하게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인하여 법인세 추징



✓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 소재 비상주 공유오피스 위장등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인

⑤ 고용중대세액공제 과다 적용

수도권 밖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고용중대세액 공제 적용시 지점(수도권 소재)사업자의
세액공제액을 과다 신고

□ 사전 신고안내

- 고용중대세액공제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상시 근로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만큼 법인세에서 공제함을 안내

□ 신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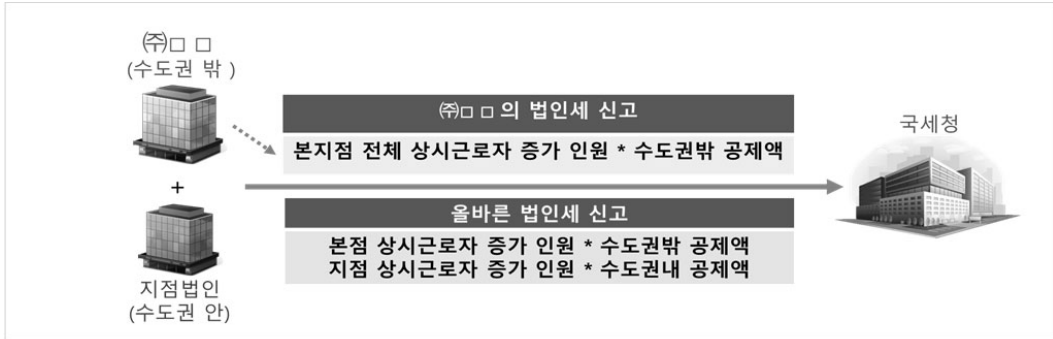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는 본점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등록하고 수도권내 다
수의 지점을 영위하며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수도권 밖 세액공제액을 적용
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소재지를 달리하는 경우, 공제액은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확인

* 중소기업의 1인당 연간 공제액 : (수도권) 1,100만원 / (수도권 밖) 1,200만원

→ 1인당 공제액 차이만큼의 과다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부인



✓ 수도권 밖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과다 적용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부인

참고 6 - 주요 세법개정 사항

□ 부동산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의 세율인상

종 전		개 정	
○ 소규모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00억원 이하	19%
2억원~200억원	19%	200억원~3,000억원	21%
200억원~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4%		

* (소규모법인인 요건) [①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 [②부동산임대업이 주업 or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③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종 전	개 정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 고용증대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 중복 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



□ 상시근로자 명세서 제출(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증 전	개 정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서류 -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 (추가)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서류 - 좌동 - <u>상시근로자 명세서</u>

□ 법인카드 전통시장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확대

증 전	개 정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 추가 손금산입 한도 ① 문화비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② 전통시장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10%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 추가 손금산입 한도 ① (좌동) ② <u>전통시장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u>

참고 7 - 무실적 법인 등을 위한 홈택스 간편신고 안내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

- 법인 기본정보 → 표준재무상태표 → 표준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세액조정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 제출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법인 기본정보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원천납부세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 가산세액 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 제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과유예 종료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재정경제부, 2026. 2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16(금)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의견과 1.16일 이후 추가 발표된 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국무회의에서【별첨】의 수정사항 및 2.12(목)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하는 한편, 같은 날 발표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을 반영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2.27(금) 공포될 예정입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4211~3, 4215~4217), 법인세·과세자료법(4221~4, 4226),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4311~2, 4314, 4316, 4308), 금융세제·교육세(4231~4, 4236), 부가가치세·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4322~3, 4326), 개별소비세·주세·조세범 처벌절차법(4331, 4337), 국제조세(4651, 4653, 4656~7), 조세특례(4131~3, 4136),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관세사법(4411~3, 4416, 4418, 4461~3), 국제기본법·국제징수법·세무사법(4151, 4154),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4121, 4126)

별첨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1. 소득세법 시행령

□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령 별표1)

당 초 안	수 정 안
☐ 농가부업규모 축산 비과세 대상 추가 ○ 개 400마리(단, '27년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 비과세 범위 확대 ○ 400 → 500마리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상증령 §12(1))

당 초 안	수 정 안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사업 범위 조정 ○ 비영리내국법인·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종교사업 제외)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 조정 ○ (좌 동)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전 출연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수정이유> 적용범위 명확화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중부령 §3①)

당 초 안	수 정 안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 조정 ○ (좌 동)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조특령 §97의3)

당 초 안	수 정 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 (내용)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70% 장특공제율 적용 ○ (양도차익 계산) 취득시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분 $\text{양도차익} \times \left(\frac{\text{임대 종료일} - \text{취득시 기준시가}}{\text{양도시 기준시가} - \text{취득시 기준시가}} \right)$	□ 계산방법 합리화 ○ (좌 동) ○ 임대기간중 발생분으로 규정 $\text{양도차익} \times \left(\frac{\text{임대 종료일} - \text{임대 개시일 기준시가}}{\text{양도시 기준시가} - \text{취득시 기준시가}} \right)$

<수정이유> 계산방법 명확화



②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조특령 § 104의24)

당 초 안	수 정 안
☐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 ○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 준용	☐ 공시방법 변경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 금융위·거래소는 기업들이 약식으로 공시('26년 한정)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예시)을 배포할 계획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5. 국세징수법 시행령·관세법 시행령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합리화(국징령 §105, 관세령 §141의5①)

당 초 안	수 정 안
☐ 명단공개 제외 대상 확대 ○ 체납액 납부비율($B / (A+B)$)이 50% 이상인 경우 -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월 1일부터 국세(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체납액	☐ 납부비율 계산방식 명확화 ○ $(B+C) / (A+B)$ - (좌 동) -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 - (C) 명단공개 연도 1월 1일부터 국세(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체납액

<수정이유>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명확화

국세청장, 연구개발 세정지원으로 ‘미래전략산업 성장’ 돕겠다!

- 국세청, 2026. 2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첨단기술이 국력이고 국가안보의 핵심기둥’이라는 국민주권정부 기초에 발맞추어 AI, 반도체, 항공·우주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달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 여수 석유·화학기업에 이어 2.4.(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서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개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임 청장은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 ②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③세무상담 전용창구 설치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의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 기업의 세무부담 최소화

- ①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약 13,500개*)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입니다.

*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 (11,800여개), 13개 강소특구 (1,700여개)

- ② 또한,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합니다.

- ③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하여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출 비용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2 연구개발 기업의 현장중심 지원 강화

- ① 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하라인)’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활동 및 공제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Ⅰ 대덕연구개발특구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Ⅰ



- 더불어,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위해 공제·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사업 단계별(창업, 투자·자금조달, 사업수행, 재무구조 개선) 맞춤형 세정지원 안내

- ② 신생 연구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장 방문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 등 연구개발 관련 도움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연구개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

- ① 연구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② 또한, R&D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도 선제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임 청장은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하여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세금애로 해소센터」 : 세무서 내 ①공제·감면 혜택 안내, ②유동성 지원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통합 안내를 제공하는 부서로 3월 중 개소 예정

-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 현장 간담회 개요

□ 추진 배경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현장중심 세정지원 강화

□ 방문 개요

- (일시) '26. 2. 4.(수) 10:30 ~ 11:30
- (장소) 대전 유성 테크노9로 35 어울림플라자 1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국세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법인납세국장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대표 10명 등

□ 주요 논의사항

- 연구개발 기업의 애로사항 수집 및 맞춤형 세정지원 논의
 -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을 위한 세무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 강화 및 세제 혜택 전용 상담창구 운영



참고 2 - 대덕연구개발특구 현황

□ 연구개발특구 개요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원
- 조성목적 : 산·학·연과 지원기관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연구기능과 비즈니스 기능의 효율적 연계 구축)
- 추진경위 : 대덕연구단지 지정('73년),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개정('99년), 대덕연구개발 특별법 통과 및 개발특구전환('05년)
- 단지규모 : 총면적 49,684천㎡(산업시설 23,732천㎡, 공공시설 13,814천㎡, 주거시설 3,484천㎡, 지원시설 1,621천㎡, 유보지 7,033천㎡)

□ 대덕연구개발특구 현황

○ 입주기관 현황

(개)

구분 계	연구분야			비연구분야			기업
	소계	공공 연구기관	기타 연구기관	소계	정부및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	
2,914	49	38	11	62	33	29	2,803

(출처 : '23.12.31.기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가동 현황

매출액	연구 개발비	인력		
		계	연구기술직	생산·관리직
26.7조원	9.8조원	96,614명	44,216명	52,398명

(출처 : '23.12.31.기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주요 특징

- '05년 연구개발 특구로 전환된 산업단지로 정보통신, 바이오,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표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타 연구개발특구와 각 분야의 기술들을 융합 발전시켜 글로벌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참고 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 제도 개요

- (제도개요)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 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소득세를 공제

□ 세액공제 대상 및 요건

- (공제대상)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재료비 등 조특령 제9조 제3항·제7항 및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
- (공제요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① (형식적 요건)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갖출 것
 - ② (실질적 요건)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정의*에 부합할 것
 - *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공제율) 일반 연구개발,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로 구분하여 해당 지출비용의 최대 50%까지 공제
 - * 로봇,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조특령 [별표7]에 열거된 14개 분야, 273개 기술
 - **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조특령 [별표7의2]에 열거된 8개 분야, 78개 기술

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Ⅰ

구분	일반 R&D*		신성장·원천기술 (당기분 방식)	국가전략기술 (당기분 방식)
	당기분 방식	증가분 방식		
중소기업	25%	50%	30 ~ 40%	40~50%
중견기업	8%~20%	40%	20 ~ 35%	30~45%
일반기업	0 ~ 2%	25%	20~30%	30~40%

* 기업은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직전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



참고 4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제도개요)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
- (신청대상) 연구개발 활동 해당 여부 및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
-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 신청
 - 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라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
- (제도혜택) 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사후관리 제외 및 과소신고가 산세 면제
-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또는 재심사 신청)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홈택스 신청시) ①심사 진행상황 확인, ②신청서류 제출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제공, ③사전심사 결과를 공유할 세무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

참고 5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 (제도개요)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 (신청대상)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컨설팅 제공
- (신청기간) 기업이 고용·설비투자 등 의사결정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도 바로 신청, 경정청구 전에도 가능
- (처리결과) 지방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컨설팅 결과를 통지
- (제도혜택)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 제외 및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 총 1,785억 원 추징

- 국세청, 2026. 2

1 물가안정 조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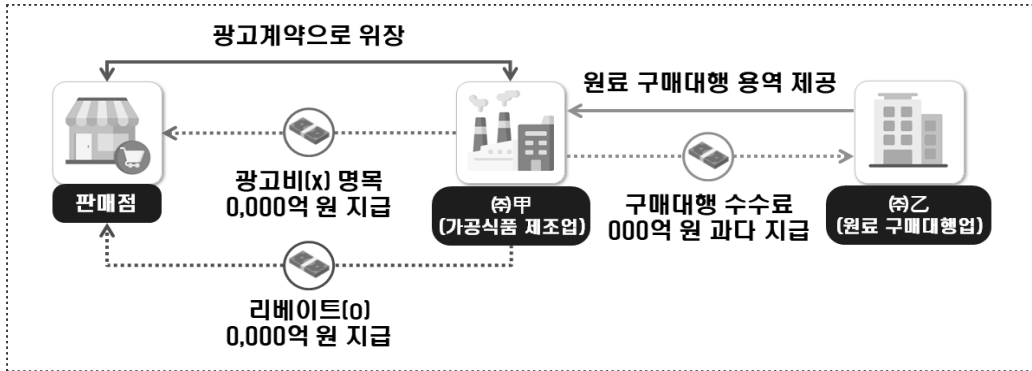
- 국세청(임광현)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25.9월부터 '26.1월까지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25.9.25.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를 종결하여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조사결과, 독·과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 한편,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는 이용료를 인상하였으나,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2 주요 세무조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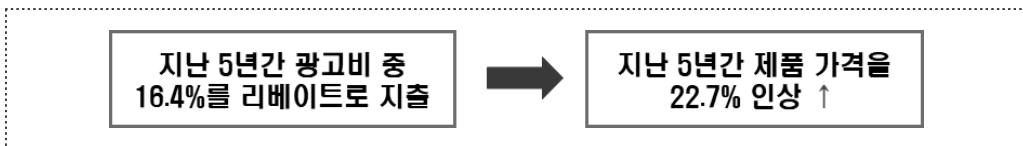
- 물가 세무조사 결과, 독·과점으로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한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실적이 가장 컸으며, 주요 탈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사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 지급하며 가격을 올린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제조업체는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계약으로 위장하여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0,000억 원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그리고,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제공받으며, 수수료 0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 부당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 0,000억 원과 과다 지급한 구매대행 수수료 000억 원은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가격 인상(22.7%)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물류비 0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유통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25.0%)으로 이어져 아이들 간식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3 세부 추진내용

- 1차 조사사례와 같이, 독·과점 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며, 늘어난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원가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검증이 필요합니다.

- 2차 세무조사('25.12.23.)는 공정위 조사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가구·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업체 등 7개와 물가안정 지원 제도인 할당관세를 악용한 소고기 등 수입업체 4개에 대해 조사 중이며,
- 3차 세무조사('26.1.27.)는 최근 검찰 수사결과, 기소된 설탕 담합업체와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업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이들 업체들의 탈루혐의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공정위, 검찰 등에서 확인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를 이용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도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생활물가 밀집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이번 4차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조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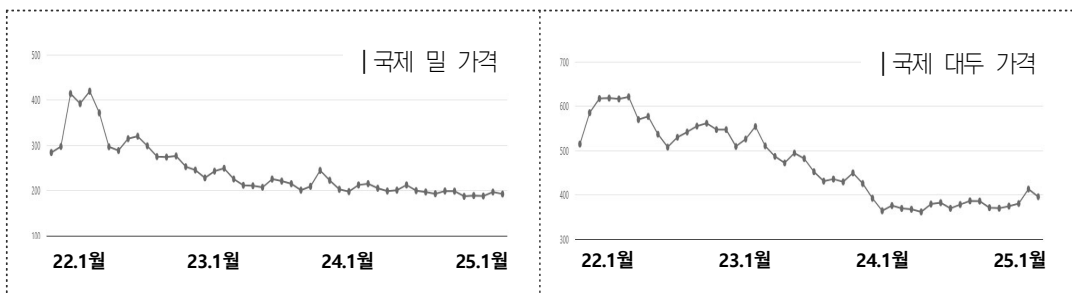
①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②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5개), ③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천억 원에 이릅니다.

- 특히, 이번 4차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① 가격담합 등 독·과점으로 가격 인상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 ② 원가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5개)
- ③ 가맹비 매출누락, 거짓 원가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유형 1] 가격담합 등 독·과점으로 가격 인상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 6개

□ 첫 번째 조사대상은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및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 출처 : 식품산업통계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가격담합 및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로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고 밥



상품가 상승을 이끈 가공식품 제조업체입니다.

- 조사대상 업체는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 밀가루 가공업체로,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및 지역·고객 나누기 등을 통해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하고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하였습니다.
 - 해당 업체는 '26.2.2(월) 검찰에 의해 6조 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 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하였고,
 -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하였습니다.
-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함으로써 수년간 수십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25년에는 수백억 원으로 300% 이상 폭증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 조차도
 - ①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 고가 매입과 ② 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금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형 2] 원가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 5개

- 두번째 조사대상은 가격 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입니다.
 - 조사대상 업체는 청과물 유통업체로, 할당관세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저가(8%↓)로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4.6% 인상하였습니다.
 - 할당관세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나,
 - 조사대상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하고, 유통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했습니다.
 - 또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국민 누구나 애용하는 물티슈 제조업체로,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빼돌렸으며,
 - 법인의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이 사주로부터 매입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형 3] 가맹비 매출누락, 거짓 원가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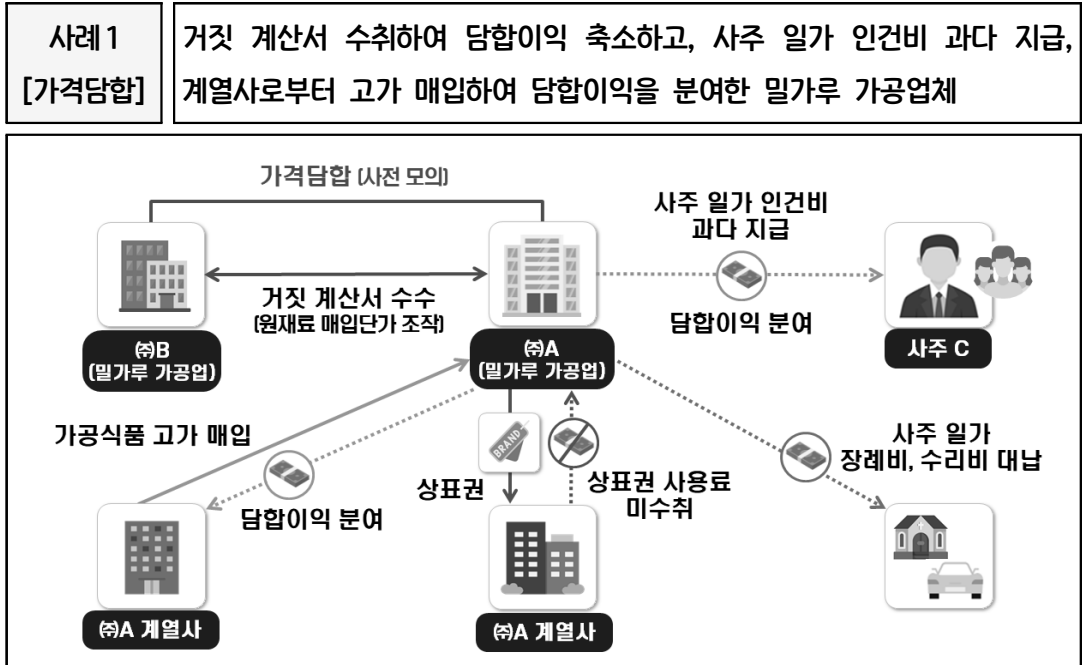
- 마지막 조사대상은 원재료 가격,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 틀에 박힌 핑계로 외식 물가 상승을 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
- 조사대상 업체는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는 규모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가맹지역본부(지사)로부터 받은 로열티·광고분담금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축소하였으며,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배우자·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 다른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1% 인상하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20%↓)으로 마진을 높여 가맹점을 확보하면서도 관련 신규 가맹비 등은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4 향후 추진방향

- 그동안 ① 소비자에게 원가 부담 전가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② 담합, 독·과점과 같은 불공정행위, ③ 서민부담 가중 생필품 폭리 등 생활물가를 상승시키며 세부담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담합, 독·과점으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 그리고,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수입업체와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여 가격 인상 및 폭리를 취하는 밀가루·설탕 등 국민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입 - 주요 조사 착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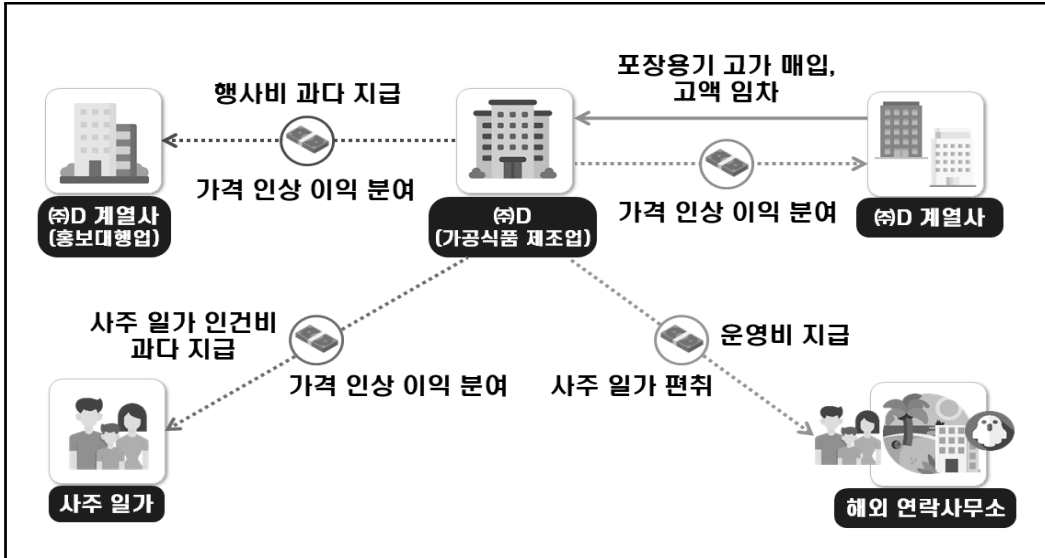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주)A는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하여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
- (주)A와 담합업체 (주)B는 가격담합 이후, 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000억 원을 축소
 - (주)A는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00억 원을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00억 원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분여하고,
 - 또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00억 원을 미수취하여 부당 지원
- (주)A는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수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

□ 조사방향

-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계산서 수취, 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 및 계열사 고가 매입으로 담합이익을 분여한 (주)A에 대해 철저히 조사

사례 2 [독·과점]	계열사에 행사비, 포장용기 매입대가와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	--



□ 주요 탈루혐의

- (주)D는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하며, 원재료 값 폭락에도 오히려 제품 가격을 10.8% 인상
- (주)D는 사주 자녀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에 행사비 00억 원을 과다 지급하고, 다른 계열사로부터 포장용기 00억 원을 고가 매입하거나, 또 다른 계열사에 고액의 임차료 00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 분여
 - (주)D는 사주와 사주의 자녀에게 인건비 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분여
 - 그리고, (주)D는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해외 연락사무소에 운영비 00억 원을 송금하여 부당 유출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 체재비 등으로 사적 사용

□ 조사방향

-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게 행사비, 포장용기 매입대가, 임차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주)D에 대해 엄정 조사

참고 - 1차~3차 물가안정 세무조사 결과

Ⅰ 물가안정 조사성과 Ⅰ					
유형 분류	조사건수(개)			종결 조사성과(억원)	
	소계	종결	진행	적출금액	추징세액
① 담합(가격·입찰)	9	-	9	-	-
②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	6	3	3	3,171	1,509
③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생필품 등	30	18	12	215	94
④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6	17	9	287	113
⑤ 예식, 장례 등	17	15	2	225	69
⑥ 할당관세, 외환 부당유출 등	15	-	15	-	-
합 계	103	53	50	3,898	1,785

* 1차~3차 물가안정 세무조사를 6개 유형으로 재분류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20일 (금)	2월 23일 (월)	2월 24일 (화)	2월 25일 (수)	2월 26일 (목)
미 달 러 (USD)	1450.70	1448.70	1442.00	1445.80	1435.30
일 본 엔 (JPY)	936.15	935.55	932.91	927.66	918.39
영 국 파 운 드 (GBP)	1953.80	1955.60	1945.91	1951.18	1946.12
캐 나 다 달 러 (CAD)	1060.26	1059.49	1052.90	1055.29	1049.58
홍 콩 달 러 (HKD)	185.64	185.40	184.42	184.82	183.55
위 안 화 (CNH)	210.24	210.04	209.58	209.80	209.27
유 로 화 (EUR)	1708.13	1709.47	1700.26	1702.28	1695.59
호 주 달 러 (AUD)	1024.19	1026.62	1017.76	1020.66	1022.29
싱 가 폴 달 러 (SGD)	1143.99	1143.73	1138.80	1141.30	1136.02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71.17	371.18	370.60	371.29	368.88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 국세청, 2026. 2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영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복지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법 §2)

○ 해당 영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참고)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 개요】

- ▶ (운영방식) 복지제도 목적성 확보를 위해 지정 된 사회복지서비스에만 해당 바우처가 사용되도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부여
- ▶ (이용방법)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바우처를 지급 받게 되고, 바우처에 정해진 수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그동안 업계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영역이며, 해당 영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영역*에 해당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 부가가치세법 §26①(5)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15)

○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다”고 검토 배경을 언급



하며,

- 연장선상에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 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에 대해,
-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기존 해석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세청 내「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24년말 기준 14,702개)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체의 세무리스크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끝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등
-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 고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국세청, 2026. 2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정부는 '26.2.28.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6.4.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원/ℓ)

유종	인하전 탄력 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4.7.1. ~ 10.31.	'24.11.1. ~ '25.4.30.	'25.5.1. ~ 10.31.	'25.11.1. ~ '26.4.30.
					휘발유△2%	△20%	△15%	△10%	△7%
		△20%	△30%	△37%	경유△3%	△30%	△23%	△15%	△10%
					부탄△3%	△30%	△23%	△15%	△10%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698(△122)	738(△82)	763(△57)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448(△133)	494(△87)	523(△58)
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156(△47)	173(△30)	183(△20)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57원/리터(ℓ), 경유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26.2.24. 예정) 등을 거쳐 '26.3.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